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창업, 성장, 재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 지역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35조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은 창업지원, 경영·법률·금융·세무·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 매칭, 정보 제공 및 정책홍보, 경영전략컨설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사업 등 소상공인 업무의 전문성과 경제분야 전문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무임.
-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관, 비영리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함

다. 위탁 운영개요

- 1) 시 설 명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칭)
- 2) 위 치 : 구미시 송정대로 120 (송정동) 구미상공회의소 4F
- 3) 시설규모 : (사무실) 113㎡
- 4) 운 영 비 : 4억원
- 5) 조직운영 : 4명 (센터장, 실무자, 컨설턴트 등)

6) 공간구성 : 사무공간, 상담 및 컨설팅 공간

7) 주요사업내용

-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보 제공
- (재)창업, 성장, 재기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기획·운영
-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소상공인 업체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탁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2월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신청자격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바. 위탁방법 :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

사. 위탁 소요예산 (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00	197	48	155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35조,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각종 맞춤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 사업 등을 담당할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경제동향에 민감하고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운영 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